

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13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17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11. 20.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3. 11. 28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조직의 기능적 재편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과·사업소의 신설, 폐지, 분리, 명칭변경

1) 신설: 관광진흥과

2) 폐지: 관광지사업소

3) 분리: 문화관광과 ⇒ 문화예술과 + 관광진흥과

4) 명칭변경: 문화관광과 ⇒ 문화예술과

나. 분청 문화환경국내 부서 신설 및 소관사무 (안 제5조의2)

다. 사업소 소관사무 (안 제15조)

라.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변경(별표 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해당사항 없음: 복지지원과-41689(2023. 10. 31.)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3-1552호
가) 예고기간: 2023. 10. 12. ~ 11. 01.(20일간)
나) 예고결과: 특이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민선 8기 현안사업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서와 사무를 조정하는 것임.
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- 부서의 폐지, 분리 및 신설
 - 폐지: 관광지사업소
 - 분리·신설: 문화관광과 → 문화예술과+관광진흥과
 - 사무의 관장 조정·명시, 삭제(안 제5조의 2, 안 제15조)
 - 문화관광국 관장 사무 조정
 - ▶ 문화예술과: 문화예술 및 문화시설·산업, 문화유산관리, 문화유산정책, 박물관 운영 등
 - ▶ 관광진흥과: 관광정책, 생태관광, 관광개발 및 관광기반 조성, 해양관광, 당항포 관광지 등에 관한 관리·운영
 - 소장의 소관 사무 중 관광지사업소에 관한 사항 삭제
 - 별표1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중 관광지사업소에 관한 사항 삭제
 - 부칙으로 부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의 이관에 따른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고 조례안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부서 폐지, 분할·신설과 관장 소관 사무의 규정 등의 조례안 내용은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여지며, 집행부가 제안한 행정기구와 관련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6조에 따라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- 조직개편 후 관장 사무 조정에 따른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고 조직개편의 목적대로 조직이 기능하도록 하며 부서 관장 사무 조정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7. 토 론 : 없음.

8. 심사결과 : 2023. 11. 28. 원안가결